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나547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1. 3. 31 선고 2020나54749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7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언

피고, 피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경선

변론 종결 2021. 3. 3.

판결 선고 2021. 3. 3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23. 선고 2018가합7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E와 피고 사이에 2016. 12. 6. 체결된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1)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918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16. 'E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E는 2002. 12. 11. 협의이혼을 하였고, 자녀로 L, F(1989년생), M가 있다.

다. F은 2017. 2. 3. G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 임차기간 2017. 3. 22.부터 2019. 3.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조7690호로 E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하였는데, 2015. 12.경 회신된 재산조회결과 부산 연제구 N 토지와 7,743,020원의 예금, 3,732,542원의 보험환급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을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E는 아들인 L의 K은행 예금계좌(O, 이하 'A예금계좌'라 한다)로 2016. 9. 8. 5,000만 원을, K은행

예금계좌(P, 이하 'B예금계좌'라 한다)로 2016. 11. 11. 520만 원, 2016. 12. 2. 11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L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계약날짜에 근접한 2016. 12. 6. E로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의 Q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E가 L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아무런 자력이 없는 E의 위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증여는 사해행위이어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E에 대하여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채권이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E는 원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7. 12. 6. 무렵에도 채무초과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E가 L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였는지 본다.

가) 갑2, 을2와 제1심법원의 K은행에 대한 2019. 9. 2.자 및 2020. 4. 6.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① E가 아들인 L의 A예금계좌로 2016. 9. 8. 5,000만 원을, B예금계좌로 2016. 11. 11. 520만 원, 2016. 12. 2. 11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 ② L이 2016. 12. 6. 자신의 B예금계좌에서 피고의 Q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③ 피고가 2017. 2. 2. G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이 다음날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E가 2018. 3. 6. 피고와 F의 주소인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J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 을3~6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E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2016. 9. 8.자 위 5,000만 원은 A예금계좌로 입금된 반면, 원고 주장의 2016. 12. 6.자 위 3,000만 원은 B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는데, 2016. 9. 8.부터 2016. 12. 6.까지 A예금계좌에서 B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된 자료가 없다(2016. 9. 19.까지 A예금계좌의 위 5,000만

원 중 2,900만 원 남짓이 이미 사용되었다).

② 원고는 A예금계좌로 입금된 위 5,000만 원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16. 9. 19.까지 그 중 2,900만 원 남짓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 임차보증금지급일인 2017. 3. 22.까지 시간적 간격이 6개월이 넘는 점에 비추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③ 피고는 B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때로부터 세달 남짓 후인 2017. 3. 31. B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④ 피고는 2002. 12. 11. E와 이혼하고, 2004. 11. 24.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2. 5. 27.에야 귀국하였다. 피고와 E가 위장이혼을 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⑤ 설령 위 5,000만 원의 일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고,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F에게 귀속하는바, 피고가 아니라 E가 수증자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3) E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문관

판사박운삼

판사임상민

1) 원고는 제1심에서 2017. 2. 3.자 1억 원의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증여계약 일자와 금액이 달라지긴 하였으나, 위 1억 원은 수차례에 걸친 금전거래를 합한 금액인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위 2016.

12. 6.자 3,000만 원은 위 1억 원의 일부로 보이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 청구의 감축에 해당한다.